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1371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고, 피항소인(분리 · 확정)

1. C

2. D

3. E 주식회사

4. F

5. G

피고들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H

변론 종결 2019. 10. 17.

판결 선고 2019. 11. 21.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1807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분리 · 확정)]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경기 가평군 1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는 2019. 8. 2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2019. 10. 17.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 승계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삭제 내지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승계참가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동혁, 판사 박기쁨, 판사 지충현

별지목록

번호	소재지	용도 / 구조 / 면적
1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 50.56㎡ (지하저수조) 1층 116.31㎡ (채택단면장)